

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

세제분석1과 김효경 분석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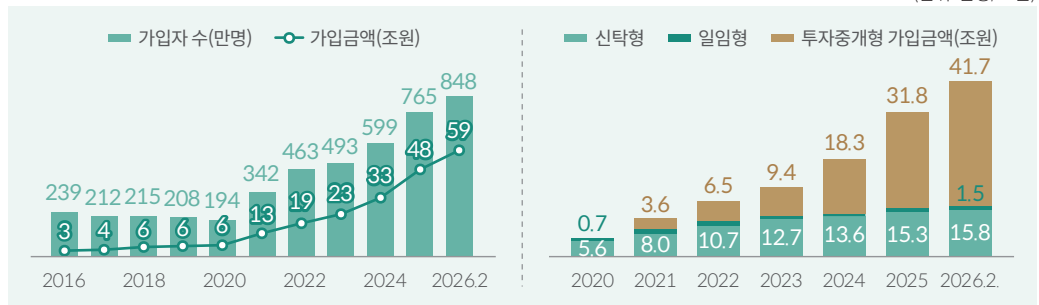
논의 배경

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ndividual Savings Account, ISA)는 2016년 국민 자산형성 지원의 목적으로 도입된 이래 대상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-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의 도입(2021년) 이후 ISA 가입 실적은 2020년 12월 말 194만명(6조원)에서 2026년 2월 말 848만명(59조원)으로 증가
- 유형별 금액(2026년 2월 말): 투자중개형 ISA 41.7조원, 신탁형 ISA 15.8조원, 일임형 ISA 1.5조원 수준¹⁾

[그림 1]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

(단위: 만명, 조원)



주: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연도 말일(2026년의 경우 2월 말일) 기준 자료임
 자료: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▪ ISA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투자 유인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, 정부는 최근 ISA 제도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의원안도 다수 발의된 상황

- 정부(「2026년 경제성장전략」(2026.1.9.))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주식·펀드, 국민성장펀드²⁾ 등에 투자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'생산적 금융 ISA'를 신설하고, 그 일환으로 청년형 및 국민성장 ISA 도입을 추진할 계획
 - (청년형 ISA) 일정 소득(총급여 7,500만원) 이하 청년에 이자·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를 적용(단, 청년미래적금,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 불가)
 - (국민성장 ISA) 기존 ISA(비과세 200만원, 초과분 9.9% 분리과세) 대비 세제혜택 대폭 확대
- 제22대 국회에는 ISA 대상 및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 8건(2026.4.27.기준)이 발의되어 있음
 - 현행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³⁾,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신설⁴⁾ 및 아동용(Junior) ISA 신설⁵⁾ 등의 내용

1)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예금·펀드 등에 투자(국내 주식 등 미포함),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임, 투자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·채권·펀드 등에 투자(예금 등 미포함) 하는 방식
 2) 첨단산업육성, 벤처·스케일업 생태계 활성화, 지역성장 등을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5년간 직접투자, 간접투자(국민참여형 포함), 인프라 투·융자, 초저리 대출 등을 시행('25.12.10~)
 3) 이강일의원안(2204299), 이소영의원안(2208454), 임광현의원안(2210487), 강명구의원안(2218258)
 4) 박대출의원안(2200390), 이연주의원안(2215701)
 5) 최은석의원안(2209737), 김상훈의원안(2218632)

ISA 운영 현황

- 우리나라의 ISA는 금융상품에 대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(한도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)를 적용하고 있으며, 2021년에는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는 등 가입대상 및 운용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
 - (대상) 19세 이상 거주자(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), 소득기준 없음
 - (운용 자산) 신탁형·일임형·투자중개형 계좌(1인 1계좌) 내에서 예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, 국내 상장주식,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
 - (의무가입기간) 과세특례 요건 충족 기간은 3년이며,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을 허용
 - (납입 한도) 연간 2천만원(5년간 총 1억원)으로, 한도 미충족 시 5년간 이월납입 허용
 - (비과세 한도) 200만원(서민형·농어민형 ISA⁶⁾ 한도는 400만원)
 - (손익통산) 수익에서 손실(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)을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

[표 1] 우리나라 ISA 제도의 주요 내용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-|---|
| 가입대상 | 19세 이상 거주자(근로소득자 15세 이상) ※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|
| 계약형태 | 신탁형(운용 지시형), 일임형(위탁 투자형), 투자중개형(직접 투자형) |
| 운용자산 | 예·적금, 펀드, 파생결합증권, 국내 상장주식, 채권 등 |
| 의무가입기간 | 3년(계약기간 연장, 계좌 해지·만료 후 재가입 허용),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|
| 납입한도 | 연간 2천만원(5년 총 1억원), 한도 미충족 시 5년간 이월납입 허용 |
| 세제혜택 | 비과세 200만원(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) 및 분리과세 9.9%, 손익통산(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) |

영국 및 일본의 운영 사례

- 영국의 ISA는 이자·배당·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, 통합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복수 계좌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좌 운영의 편의성 제공
 - 통합한도(2만파운드) 내에서 예금형(Cash ISA), 증권형(Stock and Shares ISA), 혁신금융형(Innovative Finance ISA), 노후자금 마련형(Lifetime ISA, 정부 보조 25%)의 4개 유형에 투자
 - 다만 2027년부터는 주식·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, 65세 미만의 가입자에 대하여 예금형(Cash ISA)의 납입금액을 최대 1.2만파운드로 제한하기로 함
 - 그 외 18세 미만에 대한 Junior ISA를 운영(연 9천파운드 한도, 중도인출 제한)
 - ISA의 의무보유기간이 없으며 중도 인출이 가능(당해 다른 유형의 ISA에 납입 시 한도 복원)
 - 2023/2024 회계연도의 연간 가입금액은 10조 파운드로 최근 10년간 약 1.2배 증가 추세⁷⁾
 - 전체 가입금액 내 비중은 Cash ISA 67.5%, Stock and Shares ISA 30.2%, Lifetime ISA 2.3%
- 일본의 NISA는 배당·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, 2024년 납입한도 확대 및 비과세 영구화 등 제도를 확대하고 적립형 ISA의 세제혜택 강화
 - 적립형 및 성장형 계좌를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며, 예금 및 채권(직접투자)은 대상에 미포함
 - 적립형 NISA는 분산·안전자산 펀드에 투자하며, 낮은 수수료로 소액의 장기 적립식 투자가 가능
 - 성장형 NISA는 주식·펀드·리츠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자유롭게 투자
 - 2024년 Junior ISA가 폐지되었으나, 2027년 18세 미만의 적립형 ISA 가입 재개 예정

6)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원 및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,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인 경우

7) HMRC, "Individual Savings Account(ISA) Statistics, September 2025"(2025.9.18.)

- 과거에는 적립형 및 성장형(舊 일반형) 중 1개의 유형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, 2024년 개편 시 두 유형의 혼합투자를 허용하고 납입한도를 적립형 3배, 성장형 2배 확대
 - 성장형에 투자 시 납입한도는 1,200만엔이나, 성장형·적립형 혼합 투자 시 한도는 1,800만엔으로 증가
- 비과세 기간을 기존 5년(적립형 20년)에서, 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
- ISA 계좌의 의무보유기간이 없으며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
- 가입금액은 2025년 12월(잠정) 71.5조엔(성장형 55.7조엔, 적립형 15.8조엔)으로, NISA 개편 이전인 2023년 12월 대비 약 4배(성장형 2배, 적립형 4배) 증가⁸⁾

[표 2] 영국 및 일본의 ISA 제도의 주요 내용

| | 영국 | 일본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계좌유형 (편입상품) | ① Cash ISA ② Stock and Shares ISA ③ Innovative Finance ISA ④ Lifetime ISA + Junior ISA(18세 이후 일반 ISA 전환 가능) *복수 계좌 가입 가능 | ① 적립형 NISA ② 성장형 NISA *1인 1계좌(적립형·성장형 혼합 투자) |
| 납입한도 | 연 2만파운드(Lifetime ISA 4천파운드 포함) | 연 360만엔(적립형 120만엔, 성장형 240만엔), 총 1,200만엔(적립형·성장형 혼합 투자 시 1,800만엔) |
| 세제혜택 |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자본이득 비과세 *이자소득세율 20/40/45% 배당소득세율 10.75/35.75/39.35% 자본이득세율 18/24% | 배당소득·양도소득 비과세 *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20.315% (소득세 15%, 주민세 5%, 부흥특별소득세 0.315%) |
| 보유 요건 | 의무보유기간 및 중도 인출 제한 없음 | 의무보유기간 및 중도 인출 제한 없음 |

자료: 영국 정부(<https://www.gov.uk>), 일본 금융청(<https://www.fsa.go.jp>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향후 ISA 확대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

■ ISA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·펀드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

- 우리나라의 ISA 자산 중 예·적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주식·펀드(ETF 포함)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, 국내 주식·펀드⁹⁾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펀드¹⁰⁾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
 - 편입자산 비중('24.12월 말→'26.2월 말): 국내 주식·펀드 28.3→43.4%, 해외 펀드 19.7→24.7%

[표 3] ISA 편입자산별 비중

(단위: %)

| 시점 | 예·적금 등 | 국내 주식·펀드 등 | 해외 펀드(국내상장) 등 | 그 외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2024.12월 말일 | 47.8 | 28.3 | 19.7 | 4.2 |
| 2026.2월 말일 | 29.1 | 43.4 | 24.7 | 2.8 |

주: 예·적금 등(예·적금, RP, MMF), 국내 주식·펀드 등(주식·채권, 주식형·채권형·혼합형 펀드, ETF 등 상장펀드), 해외 펀드 등(주식형·채권형·혼합형 펀드, ETF 등 상장펀드), 그 외(파생형, 파생결합증권, 기타펀드)의 금융상품으로 구성

자료: 금융투자협회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최근 논의되는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안,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신설안은 ISA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
- 다만 ISA 확대에도 자금이 해외 ETF 등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주식 투자 유인 효과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국내주식 투자 전용 ISA 등 차등적 세제혜택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 고려 필요

■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제혜택 집중 시 과세 형평성 저하 가능성 검토 필요

- 현재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('26.2.말 기준)은 710만원(서민형 685만원)으로,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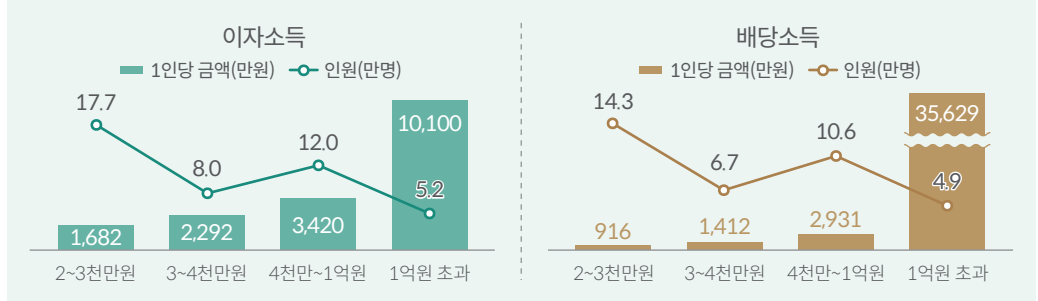
8) 金融庁, "NISA口座の利用状況に関する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"(2026.2.18.)

9) 국내 상장주식·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(대주주 분 제외)이나 배당금(분배금)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, ISA 투자 시 배당금(분배금)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됨. 다만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이 가능함

10) 국내 상장 해외펀드의 양도차익 및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, ISA 투자 시 이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됨

- ISA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,¹¹⁾ ISA 세제지원 확대 시 추가 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

[그림 2]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금융소득금액 구간별 분포: 2024년 귀속

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특히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, 합리적 수준의 세제지원 검토 필요

▪ 청년층 ISA 참여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 자산형성 기반 마련 지원 필요

- 정부의 ISA 확대안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형 ISA 추진 계획을 포함
- 최근 전체 ISA 가입금액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10%로, 다른 연령층 대비 활용도가 낮은 상황

[표 4] 연령별 ISA 가입금액 비중

(단위: %)

| | 30세 미만 | 30~39세 | 40~49세 | 50~59세 | 60세 이상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가입금액 비중(2026.2월 말일 기준) | 10.0 | 15.8 | 20.0 | 29.9 | 24.4 |

자료: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IS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 유인을 높일 경우, 생애주기에 걸친 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다만 청년층의 낮은 소득수준과 유동성 부족 여건은 ISA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과거 청년층 대상 유사 지원제도의 참여 실적이 높지 않았던 점도 참고할 필요¹²⁾
- 영국·일본은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Junior ISA 도입 등으로 가입 장벽을 낮추고 자녀·청년층 투자를 유도했으며, 특히 일본은 소액·저비용 적립형 ISA 중심으로 청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됨
-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청년 납입여건에 맞는 실효적 지원제도 설계 검토 필요

▪ ISA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되, 전 국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·청년층 등 자산 취약계층의 참여 유인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

- 이를 위해 세제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진입장벽 완화, 가입기간 요건 개선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과 같은 자산 취약계층의 가입·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

11)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행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,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직적 형평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

12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가입인원은 2025년 말 누계 기준 1.6만명, 1인당 납입액은 323만원(금융위원회 제공 자료)

시사점